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78호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조례 제2179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4
- 정선군조례 제2180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정선군조례 제2181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6
- 정선군조례 제2182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10
- 정선군조례 제2183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정선군조례 제2184호 정선군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18
- 정선군조례 제2185호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2
- 정선군조례 제2186호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25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57호 정선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26
- 정선군규칙 제1158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33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44호 재해위험지구 해제 고시.....3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662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35
- 정선군공고 제2009-665호 지방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36
- 정선군공고 제2009-666호 2009년 솔잎흑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공고.....38
- 정선군공고 제2009-674호 분묘개장공고(1차).....41
- 정선군공고 제2009-677호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45
- 정선군공고 제2009-679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46
- 정선군공고 제2009-68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47
- 정선군공고 제2009-68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50
- 정선군공고 제2009-683호 2010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52
- 정선군공고 제2009-68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4
- 정선군공고 제2009-687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57
- 정선군공고 제2009-690호 지적복구공고.....59
- 정선군공고 제2009-691호 2009년 9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60
- 정선군공고 제2009-692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68
- 정선군공고 제2009-694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69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78호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를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9조의2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역구	
성 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 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의원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안 제9조의2)
- 의원의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안 제9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79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모노레일)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2009년 9월 중 완공예정인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함

주요내용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에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모노레일)의 관리·운영을 추가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0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임계면 리명칭란과 구역란 중 “골지리”를 “문래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골지리”를 “문래리”로 한다.

②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리명란 중 “골지리”를 “문래리”로 하고, 분구리명란 중 “골지1리”를 “문래1리”로, “골지2리”를 “문래2리”로, “골지3리”를 “문래3리”로 한다.

개정이유

- 좋지 않은 한자의 뜻과 어감으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는 임계면 골지리(骨只里)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중 임계면의 “골지리”를 “문래리”로 개정함(안 별표)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1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2.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체계 증진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정선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선군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연구,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①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요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①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장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정선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 요 내 용

-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정선군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2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므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이 군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 종사자를 말한다.
3. “안전공제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공제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 · 면장은 공제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제5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인에 대하여 보장내용 등 실질적 이익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농업인 공제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용	보험종류		
	보험회사		
	가입금액		
	보험료 보	계	
		국·도비	
군비			
기타			
자부담			
보험료 지원신청액	일금	원 (₩)	

『정선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공제가입 영수증 1 부

제 정 이 유

- 정선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등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기준 (안 제4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금신청(안 제5조)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공제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함

○ 지원금의 회수(안 제8조)

-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및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3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영 별표1”을 “영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각 호외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19조제1호 중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를 “신청지역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기타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57조제2항 중 “위원장을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영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를 “영 제55조제5항, 이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을 “5인이상 13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표 19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및 강원도 권고사항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입목조사 방법 변경(입목본수도↔입목축적) (안 제18조)
 -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임야 내 개발행위허가 시 입목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은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지역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용도지역은 입목본수도를 적용하고 있어,
 - 적용방법에 따라 보전용도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용도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입목조사 방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19조)
 - 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군관리계획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매번 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군관리계획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57조부터 제63조의2까지)
 - 부군수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을 확대함(안 제57조)
 - 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 심의위원과 친족 및 이해관계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조항을 신설함(안 제57조의1)
 -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최실적이 없는 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필요 시 업무·분과위원의 조정사항을 신설함(안 제60조)

-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3조의2)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공장 입지제한규정 폐지(안 별표19)

-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m²미만)의 입지규제를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함에 따라, 동 조항을 폐지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4호

정선군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안등 유지 보수비용 및 전기요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제2항 중 “3년이 경과한 후”를 “2년이 경과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납부한 요금 전액
2.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단가+부가가치세)×등수×월수}

제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제6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로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해연도 상반기 6월15일, 하반기 12월15일까지로 한다.

4.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신청인 (관리주체)		동 수	세대수
	공동주택명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보 안 등 설치현황	총 개소수					
	구분	전기용량 (KW)	전기요금 (원)	구분	전기용량 (KW)	전기요금 (원)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합계 (상반기)			합계 (하반기)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p>*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 적용]</p>					

보조금지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개 정 이 유

- 「주택법」(법률 제9602호 2009. 4. 01)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개정(안 제4조 제1항, 안 제4조제2항)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업무조례를 개정(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4항)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금액에 대한 조례 개정(안 제6조제3항)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결정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을 제정하고 보조금 지급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함(안 제7조제6항, 안 제7조제7항)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시기를 명시하고 지급신청 시 증빙서류를 명시함(안 제9조제2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5호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건설도시과장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정선군의회 의원 1인
4.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소속 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호의 정선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②제1항 규정이외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08.02.29일자 「교통안전법」 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함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군수), 부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조례 제2186호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사항으로 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함

정선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규칙 제1157호

정선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인사위원회”를 “정선군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로,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을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4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로 지정된 비위”를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의2 및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 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 · 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지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 · 열람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훈 계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기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09.4.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징계양정 기준” 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10개의 비위유형을 23개로 세분화하여 현실적용에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신설된 징계종류인 “강등”을 포함한 6종의 징계를 경중에 따라 새롭게 적용함
-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 수수금액 및 업무처리형태를 기준으로 한 “청렴의 의무위반 처리기준”을 신설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예규로 되어 있는 「정선군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규칙으로 신설하고 기존 예규는 폐지함
- 검찰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일반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징계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별표1 적용
 -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의 감경제외 대상도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사건, 성폭력범죄”로 변경함
- 특히, 열심히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0. 20.

정선군규칙 제1158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연구기술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08.7.25일자 정선군 행정조직 개편(농업기술센터 연구기술담당관 신설)으로, 농작물피해보상금 심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함

주 요 내 용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연구기술담당관”으로 개정함

정선군고시 제2009-144호

재해위험지구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0. 09.

정 선 군 수

관리 번호	지구명	위 치	해제 면적	재해위험내역				위험 등급	해제 여부
				인명 (명)	가옥 (동)	농경지 (ha)	공공 시설 (개소)		
계	1개소								
1	북평지구	북평면 북평3,4리	A=90,000m ²	480	150	-	-	가	해제

- 이 고시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시 정선군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예방 (☎ 033-560-216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0. 01.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 10 .01 ~ 2009. 10. 14(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전제민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89-4 성일아파트 701동 704호(43동2반)	재산세(토지)외 7건	2,713,780	부동산	수취인부재
최세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3-24 오륜하이츠 아파트 602호	취득세(부동산) 외 4건	5,059,420	부동산	이사감
김유현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163-9 (2동2반)	자동차세(자동차)외11건	1,790,140	부동산	폐문부재
김홍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30-7 비원빌라 6동 101호	주민세(양도소득)	4,349,380	부동산	수취인부재
임은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106 (1통1반)	자동차세(자동차)외 8건	1,482,870	부동산	수취인불명
그레이스 종합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569	재산세(토지)	1,414,200	부동산	수취인불명
유환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94 하송4주공아파트 406동 906호(10동7반)	취득세(부동산) 외 1	29,965,040	부동산	수취인불명
안소영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56(12동1반)	취득세(자량)외 1건	1,351,230	부동산	수취인부재
최명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6(7동1반)	재산세(건축물) 외 10건	1,047,420	부동산	폐문부재

정선군공고 제2009-665호

공 시 송 달

1. 성 명 : 김광덕 외 17인

2. 주소또는거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531(12/2)

3.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부고지서

4. 서류의 내용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2009년 9월 중 귀하의 주소지·거소지·사무소 등록지로 고지(일반우편·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한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9년 10월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05.

정 선 군 수

지방세 공시송달 내역(2009년도 9월분)

발송지	개인 (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531 (12통2반)	김광덕	토지 정선읍 여탄리 118번지 4023.0000㎡ 매매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563 (3통4반)	심재룡	토지 정선읍 덕송리 636번지 6397.0000㎡ 매매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6-17 (13통6반)	임순애	토지 고한읍 고한리 136-17번지 117.0000㎡ 상속	수령인없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66-2 (11통4반)	전태산	토지+건물 고한읍 고한리 62-118 번지 46.0000㎡ 건물 85.8㎡ 상속	수령인없음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40-16 (33통1반)	김옥기	토지+건물 고한읍 고한리 352-6번지 1동 101호외 2필지 506.0000㎡ 건물 346.36㎡ 경락공매	수령인없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55 (4통2반)	전영순	토지+건물 신동읍 조동리 144번지 2동 109호 2.1000㎡ 건물 45.85㎡ 상속	수령인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701 (23통2반)	윤성택	토지 남면 무릉리 590-6번지외 9필지 452.0000㎡ 매매	수령인없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74 LG강동자아아파트 101동 2002호 (62통1반)	나두환	토지 임계면 덕암리 2번지 4688.0000㎡ 매매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9-1 봉양주공1차아파트 101동 706호 (10통3반)	허정훈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통12반)	남황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통12반)	유은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령인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34 한가람아파트 6동 1108호 (3통6반)	김옥순	정선읍 북실리 산 99-1 2호 (면적 13,223.0㎡)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2 명일엘지아파트 101동 113호 (3통9반)	박단숙	고한읍 고한리 산 31 1호 (면적 4,959.0㎡)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8 현대2차아파트 202동 1201호 (19통6반)	권태현	신동읍 덕천리 산 111 (면적 77,851.0㎡)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67 (9통7반)	이현재	남면 무릉리 15-1 (면적 1,904.0㎡)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오피스텔트레벨 315호 (25통7반)	엄인정	북평면 북평리 665-3 1호 외 1건 (면적 776.5㎡)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서울중랑구면목동 505-12호 21/9	안장식	임계면 도전리 산 44 (면적 26,281.0㎡)	수취인미거주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27 연수힐스테이트 106동 1006호 (80통11반)	정옥현	화암면 건천리 316 외 6건 (면적 37,239.0㎡)	수취인미거주

정선군공고 제2009-666호

공 고

2009년도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을 실행하고자 사업추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우리군에서 방제사업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09년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2. 사업기간 : 2009. 10. ~ 11.

3. 사업내용 : 소나무 임지 간벌 및 하층식생정리

4. 공고기간 : 2009. 10. 6 ~ 2009. 10. 25(20일간)

5.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하여 실행함.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우리군 환경산림과 전화 (033-560-2167)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6. 사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대상지 1부.

2009. 10. 06.
정 선 군 수

2009년 솔잎흑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대상지 필지별 내역

위 치			지적(ha)	대상지 면 적 (ha)	위 치			지적(ha)	대상지 면 적 (ha)
읍면	리	지 번			읍면	리	지 번		
정선	덕송	산 1	2.85	2.85	정선	덕송	산 63	4.90	4.00
정선	덕송	산 2	0.79	0.79	정선	덕송	산 64	0.34	0.34
정선	덕송	산 3	1.33	1.33	정선	덕송	산 71	2.31	2.31
정선	덕송	산 5-2	2.13	2.13	정선	덕송	산 72-1	0.96	0.96
정선	덕송	산 6	0.89	0.89	정선	덕송	산 72-2	0.89	0.89
정선	덕송	산 9	1.98	1.98	정선	덕송	산 78	0.38	0.38
정선	덕송	산 10	0.21	0.21	정선	덕송	산 78-1	0.58	0.58
정선	덕송	산 11	5.66	5.66	정선	덕송	산 79	0.23	0.23
정선	덕송	산 12-1	1.84	1.84	정선	덕송	산 80	0.29	0.29
정선	덕송	산 14-2	1.87	1.87	정선	덕송	산 81	0.39	0.39
정선	덕송	산 19	4.98	2.40	정선	덕송	산 82	0.39	0.39
정선	덕송	산 21	13.59	9.06	정선	덕송	산 85-1	0.30	0.10
정선	덕송	산 22	1.74	1.74	정선	덕송	산 93	1.24	0.62
정선	덕송	산 23	0.79	0.79	정선	덕송	산 94-2	0.26	0.26
정선	덕송	산 24	6.26	4.00	정선	덕송	산 94-3	0.50	0.25
정선	덕송	산 26	2.00	2.00	정선	덕송	산 97-1	3.84	3.20
정선	덕송	산 27	9.72	8.54	정선	덕송	산 99	0.29	0.29
정선	덕송	산 27-3	3.05	3.05	정선	덕송	산 100	5.15	5.15

제 204 호

정 선 군 보

2009. 10. 21. (수요일)

정선	덕송	산	28	6.27	6.00	정선	덕송	산	101	0.67	0.67
정선	덕송	산	30	2.37	2.37	정선	덕송	산	102	0.86	0.86
정선	덕송	산	30-2	1.56	1.56	정선	덕송	산	106-1	1.88	1.88
정선	덕송	산	31-1	0.53	0.53	정선	덕송	산	106-2	0.61	0.61
정선	덕송	산	34	0.19	0.19	정선	덕송	산	107	0.99	0.99
정선	덕송	산	37	0.38	0.38	정선	덕송	산	108	0.19	0.19
정선	덕송	산	39	2.28	1.50	정선	덕송	산	109	0.57	0.57
정선	덕송	산	41	1.43	1.43	정선	덕송	산	111	3.51	3.10
정선	덕송	산	42	2.39	2.00	정선	덕송	산	116-1	2.79	2.25
정선	덕송	산	44	0.71	0.71	정선	덕송	산	116-2	3.32	3.00
정선	덕송	산	45	2.67	2.00	정선	덕송	산	116-3	2.78	2.78
정선	덕송	산	46	1.14	1.14	정선	덕송	산	123	0.41	0.41
정선	덕송	산	48	1.09	1.09	정선	덕송	산	128	11.05	5.00
정선	덕송	산	51-1	1.14	1.14	정선	덕송	산	134-2	1.44	1.00
정선	덕송	산	52	0.89	0.40	정선	덕송	산	136-2	1.61	1.61
정선	덕송	산	56-1	0.19	0.19	정선	덕송	임	321	0.14	0.14
정선	덕송	산	58	0.53	0.53	정선	덕송	임	322	0.16	0.16
정선	덕송	산	59	0.43	0.43	정선	덕송	임	333	0.32	0.32
정선	덕송	산	60	0.54	0.54	정선	덕송	임	334-2	0.57	0.57

정선군공고 제2009-674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81-3	대	1	

2. 개장사유 :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85)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09. 10. 07.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분 묘 조 서

일련번호	분묘의 소재지	분묘의 기수	용도구분	비고
계	1필지	1		
1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81-3	1기	묘지	



사 진 대 장

분묘의 위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81-3번지
사 진 설 명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무연묘 - 원경



사 진 설 명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무연묘 - 근경
---------	-----------------------------



정선군공고 제2009-67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및이사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07.

정 선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공매대행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 10. 07 ~ 2009. 10. 20(14일간)

3. 대 상 자

[2009.10.07현재]

(단위: 원)

대상자		체납액	비고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이창선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매탄동 1176-11 102호(16동4반)	10,180,280	
이명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473-1(1반)	3,091,060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5. 기타사항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79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0. 07.

정 선 군 수

(단위 : 명)

읍 면 별	총 주민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
계	41,278	34,496	162	34,334

*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민 5명,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4명 포함

*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수(1/35) : 980명

정선군공고 제2009-68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07.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내역 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9년 10월 23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9년 10월 08일 ~ 2009년 10월 22일(15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의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통지내역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보관장소
		주민등록주소지	
05수1963	김경용	■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819번지 1/4 ■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819번지 1/4	종합자원폐차장
강원7누1250	최 흥식	■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번지 1/3 무릉주공아파트 103동 402호 ■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번지 1/3 무릉주공아파트 103동 402호	종합자원폐차장
서울8스6565	한국에너지써비 스 주식회사	■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016 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016 호	
서울70마8141	박숙은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번지 15/8 대우드림타운 106동 304호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번지 15/8 영등포푸르지오 106동 304호	종합자원폐차장
전남30나3057	장근주	■ 전남 순천시 동외동 50번지 10호 11/1 ■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번지 3호 1/13 보은아파트 5동 502호	종합자원폐차장
경기89나5751	이혜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 17호 15/5 1층동 ■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3146번지 4/	종합자원폐차장
강원8라3059	이창연	■ 강원 태백시 황지동 74번지 60호 6/5 ■ 강원 태백시 황지동 74번지 60호 6/5	종합자원폐차장
서울40로8652	정은례	■ 서울 강북구 우이동 148번지 16/6 201호 ■ 서울 강북구 우이동 148번지 16/6 201호	
31려6975	박선용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66번지 1호 1/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66번지 1호 1/	
경기3호7031	(주)한동아이엘 피	■ 경기 여주군 흥천면 율곡리 35번지 1호 (83-1308) ■ 경기 여주군 흥천면 율곡리 35번지 1호 (83-1308)	종합자원폐차장
강원70노2724	조강래	■ 강원 정선군 동면 화암리 351번지 1/3 ■ 강원 정선군 동면 화암리 351번지 1/3	
31다6254	박명규	■ 경기 성남시 종원구 상대원동 2731번지 19/ ■ 경기 성남시종원구 상대원동 2731번지 19/	
충남45마3791	김두남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19번지 8호 2/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19번지 8호 2/	
충북38가8989	김근영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둑방리 300번지 (1 /) T214-0862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둑방리 300번지 1/	

전남38나5333	손봉학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363번지 39/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363번지 39/	종합자원폐차장
경기73다2508	이윤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1번지 4호 다세대주택-101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53호 8/2 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 409호	
서울36려9742	김현철	■서울 종로구 묵동 187번지 11호 1/1 102호 ■경북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산산 2번지 1호 16/	
인천31너7767	허은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81호 28/1 노블레스빌라 101동 201호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81호 28/1 노블레스빌라 101동 201호	
강원27다8167	정호진	■강원 강릉시 교동 46번지 1호 9/2 교동한신아파트 101동 1402호 ■강원 강릉시 교동 46번지 1호 9/2 교동한신아파트 101동 1402호	
47서3863	차선호(상품용)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번지 3호 문산자동차매매단지A동 109호(대선자동차매매상사)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번지 3호 문산자동차매매단지A동 109호(대선자동차매매상사)	
광주32더3640	김진화	■광주 북구 망월동 264번지 9/1 ■광주 북구 망월동 264번지 9/1	
경북82거3694	김형일	■경북 영주시 가흥동 578번지 1호 17/1 ■경북 영주시 가흥동 578번지 1호 17/1	
경기38너7507	김우영	■경기 시흥시 대야동 567번지 1호 27/5 우성아파트 103동 103호 ■경기 시흥시 대야동 567번지 1호 27/3 우성아파트 103동 103호	

정선군공고 제2009-68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07.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불임내역 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9년 11월 08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9년 10월 08일 ~ 2009년 11월 07일(30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의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통지내역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주소지
충남1노8959	신용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17번지 19/4 주공아파트 123동 104호 ■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정동 717번지 19/4 주공아파트 123동 104호
강원33가3385	이일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춘천시 운교동 40번지 9호 8/2 ■ 강원 춘천시 운교동 40번지 9호 8/5
경남2추4560	한봉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87번지 13/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87번지 13/
서울40려7488	엄재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0번지 15호 10/7 ■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0번지 15호 10/7
전북35가3081	김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59번지 1호 23/1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산 70번지 26호 18/3 우신아파트 6동 503호
경기67거7904	김경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김포시 북변동 381번지 2호 4/1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8번지 24호 20/1 301호
경기4브1410	정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수원시장안구 영화동 427번지 17호 27/4 401호 ■ 경기 수원시장안구 영화동 427번지 17호 27/4 401호

정선군공고 제2009-683호

2010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2.
정 선 군 수

1. 보조단체의 범위

- 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라. 정선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보조사업의 범위

- 가. 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 각종 군민의식개혁(계몽운동) 추진사업
 -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 기타 정선군수가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같은 사업으로 국비 또는 도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 기타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단체

3. 지원 범위

- 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나. 자본적 경비는 지원 제외

4. 지원금액 : 금460,898,000원(금사역육천팔십구만팔천천원)**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0. 12. ~ 2009. 10. 30.

 ▶ 사업별 해당부서로 접수

나.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6.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 독창성 · 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나. 결과통보 :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지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을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에 제출 후 교부 결정

나. 정 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다. 관련사항은 정선군 기획감사실(☎ 560-2220) 또는 사업소관부서로 문의하시거나,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 “공고/고시”에 게재된 『2010 정선군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8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 10. 12.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 사북읍에 위치한 정선군 하늘터와 여량면 남곡리에 조성 중인 정선군 하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同 시설물 관리·운영을 추가 위탁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당연직 제외)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함(안 제10조 제1항)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함(안 제16조 제3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규정함(안 제17조)
- 임명권자는 임원이 연임기준에 해당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임기 1년)시킬 수 있음(안 제14조)
-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 “정선군 공설묘지 및 하늘터 관리·운영”을 추가함 (안 제17조 제1항 제6호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의3(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를 “해당 이사”로 한다.

①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정선군 하늘공원 및 하늘터 관리 운영

제21조제1항 중 “60일전”을 “40일전”으로 한다.

제26조 중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을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687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 10. 13.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09. 9.21)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오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해당 공단에 설치하고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기업 정관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690호

지적복구공고

지적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토지의 지적공부를 복구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 10. 15. ~ 2009. 11. 02. (18일)

2. 지적복구 토지표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의 표시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북평	북평	산90-2	임야	705m ²	지적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하여야 할 토지임		대장 복구
남	문곡	69-6	도로	167m ²			대장 복구
임계	덕암	75-1	도로	25m ²			대장 복구
임계	낙천	716-1	도로	117m ²			대장 복구
임계	낙천	29-1	도로	426m ²			대장 복구
임계	고양	46-1	도로	1,311m ²			대장 복구

3. 이의신청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담당(☎ 033-560-2261)

2009. 10. 15.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691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강문석 등 258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1 (20/7) 등 258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9년 9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9년 9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9년 11월 1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정 선 군 수

2009년 9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1 청학 주공아파트 404동 403호 (20동7반)	강문석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3동 503호 [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50 (19동 8반)	강용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용철)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359	강원남부생약 농업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3	이사감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359	강원남부생약 농업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7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7-20 금광 아파트 204호 (8동9반)	강인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인순)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14	강일관광여행사	여량면 유천리 435-5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9-187 (20동3반)	강정현	고한읍 고한리 44-2	수취인미거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80 신동아아 파트 4동 203호 (25동3반)	고용준	임계면 골지리 546[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9	광산지역주민 협의회	2009년 법인균등할 (사단법인광산지 역주민협의회)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 원동아파트 214 동 305호 (13동14반)	권금옥	정선읍 봉양리 36-19[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9-1 (2동3반)	권성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성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53-1 (3동1반)	권순옥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507호 [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9-2 (2동3반)	권윤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윤숙)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8	기광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기광건설 (주))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7 (14동4반)	김경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경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 명아파트 103동 905호 (2동13반)	김경애	사북읍 사북리 302 103동 905호 [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0-6 (1동5반)	김경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경자)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552 (1동4반)	김기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기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7-1 (11 동7반)	김대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대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1-15 대 원아파트 2동 508호 (8동9반)	김명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명)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33 (10 동4반)	김모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모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 북실아파트 104동 304호 (4동4반)	김무영	정선읍 북실리 772-2 104동 304호 [연 납]	이사감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 408-1 주 공아파트 201동 1702호 (22동1반)	김미순	토지 남면 광덕리 913번지 6357.0000 ㎡ 매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3층 (3동5반)	김성윤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성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818-4 (1동4반)	김순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연)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79 (3동 6반)	김애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애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 아파트 101동 301호 (5동1반)	김영실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4 (3동12반)	김영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훈)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 빌아파트 714호 (5동8반)	김예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예진)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62-5 아리 랑빌라 1동 201호 (1동2반)	김옥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옥분)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49 (5동5반)	김용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용근)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 사북아파트 206동 506호 (6동10반)	김용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용성)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	김용성	사북읍 사북리 317-31	수취인미거주

사북아파트 206동 506호 (6동10반)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56-2 (1동1반)	김운득	신동읍 조동리 238 1동 201호[연납]	이사감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56-2 (1동1반)	김운득	신동읍 조동리 238 1동 202호[연납]	이사감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56-2 (1동1반)	김운득	신동읍 조동리 238 1동 203호[연납]	이사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81-1 (13통5반)	김윤순	사북읍 사북리 282 가동 306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69-34 (2동1반)	김정임	북평면 북평리 269-34[연납]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아파트 101동 108호 (4동1반)	김종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안)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6 용담주택 101호 (1동2반)	김종운	정선읍 북실리 616-12 용담연립 1동 101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67 (3동3반)	김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준)	수취인미거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32 무궁화연립 8동 304호 (6동8반)	김지선	나전리106번지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05-9 (3동5반)	김태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4동 101호 (1동4반)	김태호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4동 101호[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03-1 장미연립 나동 202호 (1동3반)	김한범	신동읍 조동리 144 2동 507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03-1 장미연립 나동 202호 (1동3반)	김한범	신동읍 조동리 303-1 장미주택 나동 202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4-11 (3동11반)	김형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민)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67 (1동4반)	김효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효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2009년 법인균등할 ((주) 나무와나무)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9[1기분]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사북아파트 2동 208호 (6동2반)	남유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유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59 (1반)	남진해	정선읍 봉양리 207-1[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동12반)	남황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황자)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330 (19통3반)	노광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노광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410-1 (1동3반)	노종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노종욱)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0-5	다성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 다성건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4-1	대성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주) 대성건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4-1	대성건설	2008년 귀속 법인세((주) 대성건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394 (1/4)	대영영농조합	임계면 임계리 394-3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산 754-15	대유토건	2009년 법인균등할 (대유토건-무릉현장)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0-8	대한국토설계기술공단	2009년 법인균등할 (자) 대한국토설계기술공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덕산전력	2009년 법인균등할 (덕산전력주식회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23 (3동6반)	문승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문승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61-1 (3동2반)	문홍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문홍재)	수취인미거주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880-11 402호 (15동2반)	문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문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67 (2동4반)	민병오	화암면 백전리 367[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67 (2동4반)	민병오	화암면 백전리 373[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412-1 (3동2반)	민병재	고한읍 고한리 127-35[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14 (3동6반)	민수남	사북읍 사북리 397-7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08-6 (4동1반)	박권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권수)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복실리 616 용담주택 202호 (1동2반)	박만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만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1-3 (1동7반)	박미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향)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7-6 (7동2반)	박상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상태)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0-7 (3동8반)	박성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녀)	수취인미거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78-14 다가구주택 401호 (18동3반)	박성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9-1 (2동3반)	박수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수용)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4-2 (7동6반)	박순녀	사북읍 사북리 317-214[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7-1 (2동1반)	박순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순자)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사북아파트 4동 403호 (6동4반)	박영자	사북읍 사북리 369-54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바동 502호 (11동2반)	박은숙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204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20 (8동2반)	박은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은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44 (12동2반)	박일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일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16 (9통1반)	박재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재돈)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 (12동5반)	박종녀	51노2402(비영업용, 배기량:2476, 승차정원:9) [차령경감율:2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4-3 (1동10반)	박차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차만)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4-16 5층 (20동3반)	박천호	토지 정선읍 덕송리 414-7번지 1775.0000m ² 매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65-1 (3동1반)	박철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철용)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20-6 (2동1반)	박현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현자)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41 (1동4반)	배기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기현)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697-1 벽탄초교관사 (2동2반)	백소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소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94 (7동3반)	백종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종남)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202동 506호 (6동6반)	변영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변영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00-7 정선빌라 가동 401호 (4동3반)	변용진	강원2너3645(비영업용, 배기량: 1468) [차령경감율: 50%]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관리사무실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2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관리사무실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3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관리사무실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4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관리사무실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5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관리사무실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5동 106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비초로	2009년 법인균등할 (비초로)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5-15 (8동2반)	사유리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유리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7-27 2층	삼강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삼강건설주식회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봉아파트 13동 304호 (4동1반)	서규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규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328-1 (1동8반)	서길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길자)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 아파트 5동 105호 (5동7반)	서보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보현)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11-2 (10동4반)	서석달	신동읍 덕천리 73[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91-1 102호 (7동4반)	서영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영숙)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 아파트 4동 105호 (1통12반)	서정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정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 빌아파트 409호 (5통7반)	손창덕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 1동 409 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137 (1통1반)	송해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해영)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 상가 203호 (5통1반)	신금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금숙)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61-15 대원상가 2층	신영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중산기업)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2	신영농조합법 인	사북읍 사북리 32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6 (1통3반)	신완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완민)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67 (1통4반)	신원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원록)	수취인미거주
	신월2리영농회	정선읍 신월리 229-3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96	신풍	2009년 법인균등할 (신풍)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6-43 (5통8반)	신필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필선)	이사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30	아라리페인트	2009년 법인균등할 (아라리페인트 합 자회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2-10 (6통5반)	안기남	신동읍 예미리 122-1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2-10 (6통5반)	안기남	신동읍 예미리 122-10[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91 (14통4반)	안기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기정)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74 (10 통2반)	안숙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숙진)	이사감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3-2 (15통1반)	안영숙	2009년 개인사업장할 (현승수도공무소)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3 (7통7반)	양미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미숙)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19 (3통 7반)	양춘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춘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46 함백주 공아파트 1동 502호 (6통5반)	엄종찬	00832 2009년식 승용 mkx 신규(축)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6리 200-8	영농조합법인 농촌	신동읍 예미리 122-8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2 (7통2반)	오윤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윤해)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249-6 (4반)	오진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진석)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256 (4반)	오창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창길)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50-5 (3통3반)	오초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초근)	이사감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2-2	용마로지스틱	2009년 법인균등할 ((주) 용마로지스틱)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288	우드램	2009년 법인균등할 ((주) 우드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 사북아파트 206동 301호 (6통10반)	우명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우명옥)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39-1 (1통3반)	우미정	고한읍 고한리 50-54[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9-1	유니온	2009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 유니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9-1	유니온	2009년04월귀속(주식회사 유니온) : 근로소득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1-1 (9통2반)	유돈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돈하)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48-6 (2통2반)	유말순	화암면 화암리 548-6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5통4반)	유병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병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38-10 동산 아파트 나동 202호 (1통6반)	유병두	임계면 봉산리 238-10 나동 503호[연 납]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2-11 (1통1반)	유성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성관)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384 (3반)	유재천	50번9083(비영업용, 배기량:1793) [차 령경감율:5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 아파트 101호 (1통3반)	유종환	51노3508 200426 1999년식 승용 레 간자 VA69Z-2 매매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94 하송4주 공아파트 406동 906호 (10동7반)	유환철	토지 남면 유평리 432-4번지외 2필지 4612.0000㎡ 매매	수취인미거주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84-9 다 원파크빌라 101동 202호 (5동)	윤도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도순)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77 (3통5반)	윤두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두민)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7-12 (2통8반)	윤옥랑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옥랑)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6 (19통2반)	윤용재	고한읍 고한리 62-258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37 (3반)	이갑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갑녀)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03 (10 통4반)	이경자	고한읍 고한리 62-236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03 (10 통4반)	이경자	고한읍 고한리 62-237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03 (10 통4반)	이경자	고한읍 고한리 62-236[연납]	수취인미거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44 흰돌 마을 507동 302호 (9동7반)	이대희	북평면 남평리 865-3[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 사북아파트 202동 506호 (6통6반)	이동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동우)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6통4반)	이두선	사북읍 사북리 435-1 1동 100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 아파트 103동 405호 (1통3반)	이만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만진)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 북실아파트 102동 102호 (4통2반)	이명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자)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71-7 (16통6반)	이상록	사북읍 사북리 313-5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71-7 (16통6반)	이상록	사북읍 사북리 313-5[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1 (1통9반)	이상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상호)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96-1 (7통3반)	이순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순옥)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 사북아파트 2동 309호 (6통2반)	이순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순이)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33 (2통3반)	이시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시연)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97-1 (7통3반)	이윤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윤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 아파트 104동 407호 (1통4반)	이재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재선)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64-4 (21통7반)	이재영	남면 무릉리 476-2	수취인미거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릉리 302 귀빈빌 라 C동 302호 (19통6반)	이정일	토지 화암면 화암리 110번지외 3필지 2149.0000㎡ 경락공매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이종규	고한읍 고한리 62-55[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26 (9통5반)	이종식	정선읍 봉양리 36-26[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16 (1통1반)	이철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철현)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4 (8통3반)	이춘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춘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72 (1통3반)	이태순	신동읍 조동리 6-89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2 (12통5반)	이학군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101호[연납]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2 (12통5반)	이학군	사북읍 사북리 335[연납]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147 2층 (8통5반)	이한명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한명)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5-3 (5통5반)	이행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행화)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38-10 동산 아파트 나동 304호 (1통6반)	이혜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혜정)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5-16 연세 병원 (1통1반)	이희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희은)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401-2	일화종합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문곡리 관광농원 신축공사)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6-17 (13 통6반)	임순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순애)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106 (1동1반)	임은자	고한읍 고한리 127-28[연납]	수취인미거주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65-6 롯데그린빌라 가동 101호 (25동5반)	임이랑	신동읍 운치리 1150-1[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18 (1동3반)	임호근	정선읍 봉양리 340-18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18 (1동3반)	임호근	정선읍 봉양리 340-18[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 아파트 4동 503호 (5동6반)	장금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금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221 (4동6반)	장기봉	사북읍 사북리 294-3 204동 204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91 (10동1반)	장석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석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31 (1동4반)	장우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우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사북아파트 1동 203호 (6동1반)	장춘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춘식)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6-2 (9동3반)	장태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태선)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220-2 (2동3반)	장학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학식)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86-16 (6동4반)	장현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현철)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17 삼봉아파트 13동 405호 (4동1반)	전명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명이)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748 (2동3반)	전미라	임계면 봉산리 14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 (12동5반)	전순희	사북읍 사북리 435-5 206동 509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25 (3동5반)	전승우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407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0 (3동4반)	전제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제만)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202동 406호 (6동6반)	전호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호열)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60 (3동6반)	정경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경옥)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62-5 아리랑빌라 1동 202호 (1동2반)	정규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규모)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9-6 (1동2반)	정선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선경)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1-5 (5리)	정선고원관광래저	2009년 법인균등할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민())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4-4 (5동6반)	정선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선희)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39 (5동10반)	정성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성규)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97 (7동3반)	정영숙	사북읍 사북리 369-52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90-16 (5동4반)	정영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영애)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12 (3동3반)	정옥자	사북읍 사북리 373-12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12 (3동3반)	정옥자	사북읍 사북리 373-12[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12 (3동3반)	정옥자	사북읍 사북리 366-105[연납]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309호 (5동6반)	정운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운봉)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67 (1동4반)	정일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일동)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89 (3동4반)	정정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정선)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206동 301호 (6동10반)	정춘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춘희)	수취인미거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59 (8동7반)	정희종	임계면 송계리 749-39[연납]	수취인미거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59 (8동7반)	정희종	임계면 송계리 749-39[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98 (10통3반)	조남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남순)	수취인불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30 (4동8반)	조병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병옥)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38-1 (1동6반)	조세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세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사북아파트 2동 305호 (6동2반)	조영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영자)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7-12 (5동7반)	조정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정호)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71 (7동7반)	조창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창덕)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802호 (5동11반)	조형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형석)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5-1	주식회사강원 하이테크	2009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강원하 이테크)	이사감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56	진아건설	임계면 봉산리 240-19 2동 301호[연 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0-1 (3통3반)	진화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진화자)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64-14 (6통3반)	차영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차영선)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8 (3통3반)	최명종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명종)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7 (12통6반)	최상경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201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 사북아파트 205동 403호 (6통9반)	최상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상녀)	수취인미거주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 585-17 (10통2반)	최석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석순)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6 통2반)	최시규	사북읍 사북리 435-1 2동 406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54 (3통5반)	최재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재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00-2 (6통4반)	최정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정옥)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 빌아파트 1213호 (5통9반)	최정호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 1동 1213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둔곡리 399-1 (2반)	최종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종각)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 원단좌동원아파트 사동 602호 (11통9반)	탁영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탁영제)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 원단좌동원아파트 사동 602호 (11통9반)	탁영제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6동 102호[연납]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16 (10 통3반)	하선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하선영)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7-1 (1통4반)	함근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함근식)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 (6/7)	함백종합래저 타운	2009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함백종 합래저타운)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 (6/7)	함백종합래저 타운	2009년03월귀속(주식회사함백종합래 저타운) : 근로소득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 (6/7)	함백종합래저 타운	2009년04월귀속(주식회사함백종합래 저타운) : 근로소득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60 (3통6반)	함영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함영숙)	이사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84-9 다 원파크빌라 101동 202호 (5통)	함영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함영자)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8 (7통2반)	허지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지선)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76 한마을아 파트 107동 1401호 (51통5반)	홍규식	여량면 여량리 253-1[연납][토지]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3-18	황도수산	신동읍 조동리 303-11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3-18	황도수산	신동읍 조동리 308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뜻 골아파트 3동 405호 (15통4반)	황정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정숙)	수취인미거주

정선군공고 제2009-6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0. 16.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 10 .16 ~ 2009. 10. 30(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김영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자동차세외5건	1,103,900	부동산	폐문부재
송광득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취득세(부동산)	608,870	부동산	이사감
윤기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자동차세외5건	985,570	부동산	폐문부재
정의선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재산세(주택)외2	505,080	부동산	이사감
환민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종합토지세외4	526,480	부동산	수취인불명

. 끝.

정선군공고 제2009-694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및 2009.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09. 19.

정 선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 09. 19. ~ 10. 02(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033-560-2347)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정선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